

디지털 체온계

I 사례 개요

- 사 례 번 호: NY N360390 (2026.04.24.)
- 쟁 점 사 항: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
- 최종 수출국: 캄보디아
- 최종 원산지: 캄보디아



II 사실관계

용도	• 체온 측정용		
재료		캄보디아	• 외장 및 커버 • 방진 케이스 • 칩 온 보드(COB) • 기타 포장재
		중국	• 기계식 체온계 무브먼트 • 기타 전도성 부품 • 배터리 부품 • LCD, 부저, O-링 등
		대만	• 센서
Sourcing 및 공정 흐름도	Sourcing ▾  중국  기계식 체온계 무브먼트, 기타 전도성 부품, LCD 등 생산  대만  센서 생산 → Manufacturing ▾  캄보디아  STEP 1 중국 및 대만산 부품 수입 STEP 2 COB 생산 STEP 3 COB와 센서 결합 STEP 4 내부 전자부 및 외형 조립 STEP 5 시험 및 포장 → Export ▾  캄보디아 최종 수출		
상세 공정		중국	• 기계식 체온계 무브먼트, 플러저, LCD 등 기타 부품 생산
		대만	• 센서 생산
		캄보디아	• 중국 및 대만산 부품 수입 • COB 제작 • COB와 센서 결합 • MT 무브먼트, 배터리 홀더, 전도성 부품 등을 조립하여 내부 전자부 조립 • 외형 조립 • 최종 시험 및 포장

Ⅲ 판정 결과

《CBP의 판정》

- ⊙ 중국산 구성품들과 대만산 센서는 캄보디아에서의 제조공정을 거쳐야만 디지털 체온계라는 새로운 상업적 상품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,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캄보디아임

→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캄보디아

Ⅳ 시사점

- ⊙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동일·유사 품목이라도 국가별 제조공정, 부가가치 등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원산지가 다르게 판정될 수 있는 바, 동 사례와 유사한 기존 사례에서는 COB 및 센서 등의 주요 부품이 모두 중국에서 생산되어 중국을 최종 원산지로 판정함

CBP의 참고 판정 사례

물품명	디지털 체온계
사례번호	NY N349038 (2025.05.30.)
쟁점사항	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
사실관계	• [중국] - COB, 센서, 기계식 체온계 무브먼트, LCD, 부저, 배터리 부품, 기타 전도성 부품 등 생산 • [캄보디아] - 외장 및 커버, 방진 케이스, 기타 포장재 생산 - 중국산 부품과 캄보디아산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제품 생산
판정 결과	• 중국산 구성품이 디지털 체온계의 본질적 요소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며, 캄보디아에서 수행된 조립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 만큼 복잡하거나 의미 있지 않으므로,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

유의사항: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(원재료, 제조공정 등)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